

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

노 명 호*

요 약

고려건국 후 11세기초까지 탐라는 만주지역의 女眞, 발해유민과 함께 海東 天下의 범위에 들어갔으며, 그 중에서도 고려 황제로부터 관작을 받고 군사·외교·교역 등의 교류를 긴밀히 맺는 化內의 범위에 속하였다. 그러나 여진 집단들과 달리 탐라는 고려국가 범위와 밀접한 三韓一統意識의 범위에서는 발해유민과 유사하게 고려 내부의 세력에 따라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상태였다.

현종 2년(1011)에 탐라는 고려조정에 요청하여 州郡의 예에 따라 朱記를 받았다. 이로써 탐라는 행정체제상 고려의 羈縻州가 된 것이다.

현종 2년경에는 탐라에 상주하는 旬當使가 파견되었다. 구당사의 본래 기능은 국경 등의 중요 나루터를 통제하고 동향을 감시하는 기능이었으나, 업무의 성격상 제한적으로 성주 등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고려정부와의 연락기능을 하였다.

외교권이 없으며, 고려의 법제에 의한 수취가 행해지던 이 시기의 탐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고려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었다. 일본의 승려 成尋은 문종 26년(1072)에 제주도 근해를 지나 송으로 가면서 '高麗國 耽羅山'이라 하였으며, 宋에서도, '託羅國'을 '高麗管內'라 하였다.

* 서울대학교 교수

고려국가 내에서 탐라는 정치적으로는 기미주의 위치이지만 탐라인은 고려 정부로부터 내지인처럼 '우리의식'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런 속에 탐라인은 고려정부 및 중앙지배층에 진출하였다. 11세기에 탐라 출신 高維가 賓貢으로 남성시에 응시한 이유는 그의 출신지 탐라가 內地가 아닌 羈縻州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탐라는 숙종 10년(1105) 耽羅郡이 됨으로써 기미주에서 內地가 되었다. 이 때에 '耽羅'와 함께 '毛羅'가 자주 혼용되던 상황에서 '耽羅'를 공식 읍호로 하였다. 그리고 탐라에 외관이 처음 파견된 것은 의종 6년(1152) 11월 팔관회 후부터 의종 7년 11월 팔관회 전의 시기였다.

한글 키워드 : 제주도, 高麗, 耽羅, 羈縻州, 지방제도

I. 머리말

탐라가 고려의 정식 군현으로 편제되기 전까지의 상태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당시의 탐라가 사실상 독립적 상태로서 고려에 조공을 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고¹⁾, 다른 하나는 이미 태조대부터 탐라는 고려의 지방행정단위로 편입되어 있었다는 것이다²⁾.

두 가지 설의 연구들은 모두 나름으로 치밀한 사료조사와 해석을 통해 탐라지방사에 대해 중요한 사실들을 규명하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설이 이러한 상반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주된 요인은 당시의 고려국가 및 그 내외의 집단들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다.

고려시대에 대한 조선시대나 근현대의 역사적 이해에는 후대의 현상을 소급시켜 투영한 통념이나 후대의 이데올로기들로 인하여 크게 변형된 것들이 있는데³⁾, 그 대표적인 한 가지는 고려시대의 국가와 그 내외의 집단들에 대한 이해이다. 고려시대의 국가나 그 내외의 집단들은 조선시대나 근대의 그것으로 미루어 기본적으로 같은 기반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양자 사이에는 매우 다른 중요한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시대나 근대의 국가는 국경선을 경계로 외국과 접하고 있어, 내부의 지방단위와 국경 밖의 지역은 물론 내국민과 외국인은 명확히 구분이 되고, 그에 따른 국가의 통치력이 미치는 수준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이해를 고려시대, 특히 10~12세기 고려에 소급시켜 적용할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을 국내와 국외의 두 가지로 단순화시키는 한편 역사적 실상을 크게 왜곡시키게 된다.

1) 진영일, 1996 〈고려전기 탐라국 연구〉 《탐라문화》 16.

강창현, 1998 〈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2) 金日宇, 2000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3) 노명호, 2003. 〈통념과 이념에 가리운 고려사회의 체제적 특징들〉 《한국사연구 방법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학회편

고려시대, 특히 10~12세기에는 고려국가의 경계가 갖는 의미가 내외의 집단들과 병존하는 체제에 제약을 받은 까닭에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국가의식도 근대의 한민족의식과 같은 절대적이라 할만큼 확고한 집단의식이 존재하지 않고, 그 안팎에 병존하는 여러 수준의 집단의식들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나는 근래에 이러한 고려시대의 국가의식 및 그와 연관된 집단의식에 대해 일련의 연구들을 발표하였고 후속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바, 탐라와 고려국가의 관계는 그 중요한 측면을 드러내주는 주제이기도 하다.

10세기에서 12세기에 이르는 동안 탐라와 고려국가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진행되었다. 그 변화는 고려국가의 국경 안팎에 존재한 여러 집단들과 대응되는 단계적 변화를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먼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바탕으로 고려국가의 안팎에 존재한 집단 및 집단의식들과 그 역사적 측면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그와 연관하여 탐라와 고려국가의 관계가 시기별로 전개된 상황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II. 고려국가 안팎의 지역집단들

10~12세기 고려에서 나타나는 집단의식의 가장 큰 단위는 ①海東天下였다. 그것은 관념상으로는 遼河以東을 범위로 하는 고려가 중심이 되는 小天下였으며, 그 정치적 주재자인 고려 君主를 당시에 '海東天子'로 부르기도 하였다⁴⁾. 宋, 契丹 등의 소천하와 병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해동천하에는 옛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의 유민들과 고구려 및 발해의 지배하에 있었던 靺

4) 노명호, 1997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의 天下觀〉 《震檀學報》 83

_____, 1999 〈高麗時代의 多元의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추명엽, 2005 〈고려시대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靺鞨에서 연원한 것으로 보이는 女眞族들의 다수가 포함되었다. 해동천하 내의 집단들 간에는 상호 경쟁의식과 차별의식도 존재하였으나 오랜 역사과정에서의 공동 경험과 문화적 교류를 배경으로 한 매우 느슨한 유대의식이 존재하였다.

①해동천하의 중심에는 고려 君主權과 고려의 律令이 직접 미치는 ②a高麗國家가 존재하였고, 그 외곽에 ②b化內라고도 칭하는 범위의 집단들인 고려에 投化한 女眞 집단들처럼 고려의 官爵을 받고 고려와 군사, 외교, 교역 등에서 교류를 하는 범위의 집단들, ②c化外の 집단들로 다른 국가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고려의 화내 주위에 존재하는 여진집단 등이 있었다⁵⁾. 그리고 11세기로 들어가면 고려 內地의 지방 군현처럼 邑號, 官印인 朱記 등을 고려 정부로부터 받고 고려 정부가 그 주민을 編籍하며, 化內 집단들보다 고려와의 군사적 정치적 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한 ②d靺鞨州들이 출현한다⁶⁾. 기미주들은 화내집단에서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지만, 뒤에 여진족 내의 完顔部勢力이 등장할 무렵에는 여진족 내부의 정치적 파동으로 화외집단에서 바로 기미주가 되기를 희망하는 집단들도 있었다.

후삼국의 통일로 고려국가가 성립하였음에서 직접 나타나듯이 ②a고려국가 내부에는 후삼국 성립의 배경이 된 옛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의 주민들을 바탕으로 한 ④三國遺民意識을 갖는 집단들이 존재하여, 신라가 통일을 한 7세기 중엽 이후 발달한 삼국주민들을 하나로 관념하는 ③三韓一統意識과 병존하고 있었다. 삼한일통의식은 후삼국 모두에서 통일의 당위성이 받아들여지고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 고려국가 성립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집단의식이었다.

삼한일통의식은 실제로는 그 주도세력에 따라 신라계와 고구려계의 삼한일통의식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⁷⁾. ③a高句麗系의 三韓一統意識에는 ④a

5) 추명엽, 2002 <고려전기 '번'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송용덕, 2005 <고려전기 국경지역의 주민성편제> 《한국사론》 51

6) 송용덕, 2005 위의 논문

7) 노명호, 1998 <高麗 支配層의 渤海遺民에 대한 認識과 政策> 《汕紘史學》 8

고구려유민의식의 범위에 후삼국의 고려 주민을 중심으로 하고 渤海人(遺民)도 同類로 인식하여 포함함으로써, 이들을 삼한일통의 범위에 포괄하려 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③b新羅系 三韓一統意識에서는 고구려계 유민중 신라통일에 포함되지 않고 한 때 신라와 대치하였던 渤海人(遺民)들을 제외하고 있었다. 이 두 계열의 삼한일통의식의 차이는 매우 강고한 것이어서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까지 발해사 이해에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집단 및 집단의식들과 결합된 고려국가의 영토와 백성의 외연은 그 영향을 받으며 상당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내외의 구분은 경계선에 의해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넓은 漸移地帶들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국가의 백성은 우선 ③a와 ③b, 두 계열의 삼한일통의식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고려국가는 주민으로 ③b신라계 삼한일통의식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면서 ③a고구려계 삼한일통의식을 바탕으로 발해유민의 일부이지만 많은 수를 오랜 기간에 걸쳐 ④삼국유민에 준하여 받아들였다. 삼국유민만이 아니라 ①해동천하 범위에서 여진족 등의 집단들이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는 속에서도 ②b化內, ②d靺鞨州, ②a內地 郡縣住民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 정치-군사적으로 큰 파동이 있는 경우 그 유입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반대로 유출되기도 했다.

고려국가 내부의 집단 및 집단의식들도 고려의 국가적 결집력과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④a고구려유민의식, ④b백제유민의식, ④c신라유민의식은 고려중기 무신집권기까지도 대규모 지방반란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다. 또한 삼국유민의식과 함께 각 지역에는 삼국의 문화전통 요소들이 대중적 기반을 가지며 잔존하고 있었다.

또한 고려국가의 기본적 지방단위로는 新羅下代의 무정부상태에서 발달한 ⑤地域自衛共同體들이 11세기초 대거란전쟁에서는 물론 13세기 대몽고전쟁 기까지도 매우 강인한 전통을 유지하며 존속하여 중앙정부군의 괴멸 이후 30년간에 가까운 전쟁을 수행한 일차적 기반이 되고 있었다⁸⁾. 고려중앙세

력은 지역자위공동체를 억지로 해체하여 재편성하기보다는 그들을 인정하고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하여 고려국가체제 내에 편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의 자치권에 따라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체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였던 통일신라시대나 조선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가졌다. 한편 이러한 지방사회들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고려중앙세력은 호족세력들에서 기원한 각 지방의 최고지배층인 戶長層을 중심으로 科擧, 軍功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관리로 참여하는 통로를 개설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고려 官人層의 지역적 출신은 고려 영토 전반에 걸친 중요지역들에 분포하게 되었다. 이는 신라시대의 지배층이 경주 일원의 출신인 骨品貴族이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한 고려시대의 국가의 안팎에 존재한 집단 및 집단의식과 관련된 사실들은 당시의 탐라와 고려국가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거의 모두 관련되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을 고려하며, 탐라의 상황에 대해 보기로 하겠다.

III. 海東天下의 化內와 三韓一統 사이의 耽羅國

잘 알려진 바처럼 耽羅는 고려 太祖 8년에 방물을 받친 바 있고⁹⁾, 태조 21년에는

冬12월에 耽羅國 太子 末老가 來朝하니, 星主 및 王子의 爵을 내렸다.(《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21년)

8) 노명호, 2004〈고려시대 지역자위공동체〉《한국고대중세 지방제도의 세문제》

9) 十一月 己丑 耽羅貢方物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8년(925))

라 하여, 탐라국의 태자 말로가 내조한 것을 계기로 首長들에게 전시대 이래로 내려오던 성주와 왕자의 작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사를 토대로 이 때부터 탐라는 고려에 조공을 바치나 독립국으로 존재했다는 견해와¹⁰⁾ 고려의 한 지방인 '島'의 하나가 되었다는 견해가¹¹⁾ 제기되고 있다.

태조 21년 이후 탐라의 토착 지배적인 가계는 그 지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고려국에 조공한 것이 《高麗史》에 대강 20년에 1회 정도로 한 성주의 재위 중 1회 정도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¹²⁾. 새로운 성주 등의 세습 인정과 관련된 내조는 대개 그러했던 것으로 보이니, 조선 초에 정이오가 고씨가문의 자료들을 토대로 쓴 〈星主高氏家傳〉에

前朝의 태조가 統三한 직후에 星主 高自堅, 王子 梁且美가(중략) 한 代에 한 번 造회하여 알현하니(世一朝見), 태조의 대우가 매우 각별하여 음식과 供帳이 거의 王者인듯 하였다.(하략) (《東文選》 권101)

라 함에서 '한 대에 한번 造회하여 알현한다'는 것도 그러한 것을 보여준다. 탐라와 고려 사이의 공적인 왕래가 자주 있었다는 것은 탐라가 고려의 한 지방이었음을 나타내는 필요조건이라 할 것이니, '대략 20년에 한 번', '한 대에 한 번' 정도에 불과했다면, 탐라를 고려의 한 지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위 기사의 '世一朝見'은 새로운 성주 등의 세습에서의 친조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일로 고려정부와 많은 접촉이 있었다.

《高麗史》의 耽羅 來朝기사는 새로운 성주의 세습 追認 등과 관련한 입조나 새로운 제도적 변화에 해당하는 계기가 된 來朝 등 대개 비교적 특별한 경우들을 기록한 것이다. 탐라 사자 등의 通常인 왕래는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기록이 생략될 수 밖에 없었으니, 《實錄》과 달리 제

10) 주1)의 연구들

11) 주2)의 연구

12) 진영일, 1996 앞 논문

한된 서술분량의 사서인 《高麗史》에서는 八關會 등의 대규모 행사도 일상적 일이므로 처음 보인 경우(初見)나 국왕이 親行한 경우에만 〈世家〉에 서술하는 원칙으로 편찬된 것이다¹³⁾. 태조 21년(938)의 내조 기사 이후 현종 2년(1012)에나 관인인 朱記를 요청한 기사가¹⁴⁾ 보이는 것도 이러한 《高麗史》의 서술 원칙이 주된 요인이다.

태조 8년의 기사는 방물을 바쳤다는 극히 짧고 평범한 내용이지만, 전후 연대의 기록들과 함께 보면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탐라가 고려에 보낸 첫 공식 방물임을 알 수 있다. 후대의 기록 중에도 태조 8년조처럼 방물을 바쳤다는 것만을 밝힌 극히 간략한 기사가 몇 건 보이는데, 편찬원칙을 벗어난 기록인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대개 전후사정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거나, 아니면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들이 《高麗史》가 반세기에 걸쳐 거듭 改撰되는 과정에서 축약되어 탈락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탐라와 고려정부의 잦은 접촉이 반드시 고려정부가 탐라를 한 지방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강제함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근래의 탐라사연구에서는 고려의 탐라에 대한 강제와 지배라는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이미 탐라도 내륙의 지방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삼국시대를 경과하면서는 작은 지역사회 단위의 자급자족에만 머무를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탐라가 고려에 方物을 進獻한 것은 고려라는 세력의 압력에 의한 것인 측면과 함께 독자적 대외교섭을 통제받았던 탐라가 육지로부터 물자나 문화 등을 입수하기 위한 필요의 측면도 있었다. 성주 등에 대한 새로운 관작의 하사 등과 관련하여서는 보통 조공 형태로 토물을 바친 것이 부수되어 나타나는데, 탐라의 方物에 대해서 공식적 대가품이 지급된 사례가 보인다. 문종 7년 2월의 경우 많은 양의 方物을 바친 것에 대해 공복, 은대, 綵緞, 藥物을 하사품으로 내린 것이 나타난다¹⁵⁾. 탐라의 방물은 의무적 성격을 띠는 일정

13) 《高麗史》〈纂修高麗史凡例〉

14) 《高麗史》권4 世家4 현종 2년 9월 을유

15) 《高麗史》권7 世家7 문종 7년 2월

량의 물품은 무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나, 적어도 그것을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탐라측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하사품 형식으로 지급되는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종 7년 기록 역시 국왕이 친히 하사한 형식이거나, 官府 차원에서 행해진 통상적 하사품 형식의 거래는 《高麗史》 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탐라가 참여하는 공적 거래의 정기적인 공간은 대규모 祭天儀禮로서 축제의 성격도 띠는 팔관회를 계기로 열렸다. 태조 원년부터 전시대로부터의 전통을 이어 국가적 의례로 매년 仲冬에 개최된 팔관회는 성종대에 들어가 폐지되었다가 현종 원년에 부활되어 거란과의 전쟁을 대승으로 끝맺은 후에는 고려가 중심이 되는 海東天下의 공식적 제천의례로 발전해 갔고, 동아시아 지역사회의 중요한 교역의 장으로서도 기능하게 되었다. 靖宗 즉위년(1034)에는 팔관회의 세부 내용과 함께 지방관이 表를 올려 賀禮하고, 宋商客, 東西蕃, 耽羅國도 方物을 진헌하여, 자리를 주어 의식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후 常式이 되었다¹⁶⁾. 적어도 이 때부터 탐라는 매년 정기적으로 팔관회에 참여 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그전에는 탐라 등의 참여가 없다가 갑자기 참여하게 되었다기 보다는 그 전에도 정종대와 같은 의례는 갖추어지지 않았으나 송상, 여진, 탐라 등의 팔관회 참여가 있었기에 이러한 의례의 제정이 가능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팔관회에 참여하여 방물을 진헌한 송상객, 동서번, 탐라국은 고려국가 내부가 아니라 그 밖에 위치하였으며, 팔관회에 참석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고려가 중심이 되는 해동천하를 기준으로 하면 둘로 나뉘는 바, 하나는 해동천하 밖의 국가에 소속된 상인들인 송상객이고, 다른 하나는 해동천하 내부에 존재하는 동서번과 탐라국이었다. 팔관회의 참여가 허용된 동서번은 여진족들 중에서도 고려에 歸附하는 절차를 거쳐, 해동천하 내에서 天子, 皇帝를 칭하는 고려군주로부터 그 首長이 武散階 등의 爵을 받고, 독자적 정치체로서 존속하면서도 고려의 외교적 통솔에 따르

16) 《高麗史》 권6 世家6 靖宗 즉위년 11월 庚子

는 '化內'로도 지칭되는 해동천하의 藩屏 집단들이었다. 영성한 사료로 인하여 탐라의 경우에도 당시에 화내라는 말이 쓰이고 있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탐라 역시 고려와의 관계에서 동서번의 여진집단들과 동일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늦어도 태조 21년부터는 化內에 해당하는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해동천하의 化內에 속한다는 점에서 탐라는 동서번의 여진집단들과 고려와의 관계에서 공통점을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었다. 고려는 후백제와의 후삼국 통일전쟁과정에서 여진기병을 끌어들이었고, 현종대의 거란과의 전쟁에서도 고려의 편을 든 화내 여진 등이 거란군의 격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은 《宋史》나 《續資治通鑑》 등에서도 보이는 바로, 여진과의 관계는 고려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인 連帶까지도 포함하는 관계였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는 이들 여진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태조 왕건은 여진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배신하는 신뢰도가 낮은 집단으로서 '人面獸心'이니 경계하라고 하며 그들을 위한 館을 세우는 등 포섭 정책을 취하면서도 그 館을 성 밖에 세우게 하였다. 또한 그들의 내투는 가급적 內地 군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경 안팎의 외곽지대에 두는 등 거리를 두고 있었다¹⁸⁾. 그 배경에는 고려와 발해 시대를 통해 같은 정치권에 속하면서도 동화되지 않은 문화적 차이가 큰 이들이 고려에서도 그만큼 사회적으로 융합되기 어려웠던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후삼국을 통일한 초기의 고려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삼한일통의식의 대상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여진족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별의식은 탐라인들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는 것

17) 《宋史》 권487 列傳246 外國3 高麗

《續資治通鑑》 권 74 大中祥符 3년 11월조(거란 統和28년, 고려 현종 원년)

金庠基, 1985 《新編 高麗時代史》 89~93쪽

方東仁, 1985 〈高麗前期 北方政策의 推移〉 《領土問題研究》 2

18) 是歲 詔有司曰 北蕃之人 人面獸心 飢來飽去 見利忘恥 今雖服事 向背無常 宜令所過州鎮 築館城外 待之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14년)

《高麗史節要》 권1 동년조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인다.

들이다. 이 점에서 동서번 여진집단들은 탐라와 같은 화내의 범위내에 들면 서도 큰 차이를 갖는 것이니, 탐라는 고려와의 관계에서 삼한일통의식과 관련하여 여진족보다는 발해유민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고려에서는 만주지역을 비롯한 교류의 빈도가 잦은 외부의 집단들과의 교섭을 위하여 두 계통의 실무직을 두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여러 가지 사무상의 실무를 담당하는 通事이고, 다른 하나는 통역을 담당하는 譯官이었다. 漢族, 契丹族, 女眞族과의 교섭에서 고려정부는 譯官과 通事を 두었고, 만주지역 渤海遺民과의 관계에서는 通事만을 두었는데, 耽羅와의 관계에서는 둘 모두를 두지 않았다¹⁹⁾.

漢族, 契丹族, 女眞族과 달리 발해에 대해서는 통사만이 설치되고, 많은 발해인과의 접촉이 있음에도 역관을 통한 의사소통을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려 건국 중심부인 중부권에서는 동명신화와 함께 동명신앙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에 걸쳐 큰 의미를 가지며 분포하고 있었는데, 12세기 전반 발해인에서도 동명의 후예를 내세운 것이 보인다. 학자에 따라서는 고려인구의 5%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하는 발해유민의 많은 유입이 있었음에도 발해유민이 내지인들과 문화적 충돌을 보인 기록은 없다. 이는 발해인에 비하여 적은 수가 들어왔음에도 고려인들과 문화적 충돌이 자주 나타나는 여진인들과 대조되는 측면이다. 왕건을 중심으로 한 고려 건국세력은 발해를 '親戚'으로 지칭하는 同類意識을 갖는 한편, 고구려계 문화를 가지며 발해멸망후에도 2~300년 이상 자타가 '발해인'을 칭한 발해유민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²⁰⁾.

이러한 발해유민은 고려 건국지역주민과 함께 고구려의 후예로서의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러한 때문에 고구려 건국세력은 삼한일통의식에 발해유민을 포함하고 있었다. 고려건국중심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발해유민은 삼한일통의식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고려국가의 범위에는 일부만이 들어오

19) 노명호, 1998 앞 논문

20) 노명호, 1998 앞 논문

고 일부는 그 외부에 존재하였다. 한편 신라계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고려의 역사적 정통성을 신라계승으로 연결시키려는 집단에서는 발해인은 삼한일통의 범위에서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발해유민들, 특히 고려국가에 통합되지 않은 발해유민들은 고려내부의 세력에 따라 삼한일통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탐라는 여진, 발해유민과 비교하면, 함께 해동천하의 범위에 들고 여진과 만주에 잔류한 발해유민의 일부처럼 화내의 범위에도 들었다. 그러나 고려국가 범위와 밀접한 삼한일통의식의 대상범위에서는 발해유민과 유사하게 그 경계선에 반쯤 걸쳐 있는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래로 탐라는 '國'으로서 계속 지칭되리만큼 높은 자치권을 갖는 실체였다. 《三國遺事》에 인용된 《海東安弘記》에는 '九韓'으로 '日本, 二中華, 三吳越, 四毛羅, 五鷹遊, 六靺鞨, 七丹國, 八女眞, 九穢貊'이 열거되어 있다²¹⁾. 여기서 '九韓'은 '三韓'과는 별개인 그 외부의 존재들이거나와 毛羅가 그 중 하나로 일본, 중화 등과 병렬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실제의 역사 지식보다는 민간의 세계관이 반영된 秘記類 책에서 탐라를 삼한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탐라가 독자성을 가져, 삼한일통의식의 범위 밖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대이래로 한반도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삼한일통의식의 범위에 근접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탐라는 476년에 백제에 조공을 하고 관작을 받은 이래로 독자적인 대외교역권이나 외교권을 갖지 못한 상태여서, 백제 멸망시에도 탐라사자는 백제의 잔여세력을 따라 唐軍에 항복하고 있었다. 백제 멸망후 30여년 정도 탐라는 신라와의 관계를 갖는 것과 병행하여 왕을 칭하기도 하며 독자적으로 일본과 중국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곧 신라에 복속되어 다시 외교권과 대외교역권을 상실하였고, 그것은 고려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다. 탐라에는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한반도와 연결되는 문화들이 존재하였음이 유물

21) 《三國遺事》권1 紀異1 馬韓

을 통해 알려지고 있고, 5세기 후반부터는 고려초까지만도 500년 가까운 역사에서 탐라는 거의 지속적으로 독자적 대외교섭권이 없이 내지의 국가들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탐라국과의 관계에서 고려정부는 通事도 譯官도 두지 않았다. 방언의 차이는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탐라에서 파견되는 사신이나 탐라의 지배층들은 내지인들과의 적지 않은 접촉기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의사소통에 별도의 통역을 두었던 흔적이 없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내지인들과 큰 충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여진과 크게 다르면서 발해유민들과 유사한 점이다. 또한 탐라의 경우 通事도 두지 않은 것은 만주지역의 발해유민과 달리 외교적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적었던 징표일 수 있다.

탐라인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고대부터 내지의 국가들과 장기간 지속적 복속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탐라는 고려국가로부터 비교적 높은 자치권을 갖는 속에서도 삼한일통의 범위에 준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목종 5년(1002) 탐라산의 용암분출이 기록되고, 목종 10년(1007) 해중 화산활동의 결과가 '瑞山'으로 인식되어 太學博士 田拱之가 파견되어 관찰후 그림을 그려 보고한 기록이 남아 《高麗史》〈五行志〉에 수록되게 된 것은 그러한 점에서 주목되는 사실이다²²⁾. 여기서의 '瑞山'은 《高麗史》〈오행지〉의 바탕에 존재하는 인간, 특히 君主의 행위와 관련하여 자연에 異變으로 咎徵과 祥瑞가 나타난다는 관념 중, 祥瑞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서는 흔히 군주의 德治의 소산으로 생각되었다²³⁾. 그런데 〈오행지〉에 그러한 자연의 이변을 기록한 지역은 기본적으로 고려의 내지에 해당하는 지역들이다. 물론 이러한 구정설이나 상서설은 정치적 선전에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고려 군주와 관련된 상서가 나타난다고 여기는 지역적 범위에 탐라가 포함되고 있었

22) 《高麗史》권55 志9 五行3 穆宗 5년 6월 : 穆宗 10년

23) 李熙德, 1978 〈高麗時代 五行說에 대한 研究-《高麗史》五行志를 中心으로-〉 《歷史學報》79

다는 사실이다.

이는 탐라에 아직 관리도 파견하지 않았고 기미주 형식으로도 편성되지 않은 화내의 단계이지만, 고려 중앙정부에서는 그 지역이 내지 군현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속에 탐라인은 고려도성을 방문하는 인원이 여진과 달리 대규모로 허용되고, 국내의 상인과의 거래가 허용되고, 체류기간의 제약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고려건국 후 11세기초까지 탐라는 만주지역의 여진, 발해유민과 함께 해동천하의 범위에 드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 중에서도 고려 황제로부터 관작을 받고 군사 · 외교 · 교역 등에서 교류하는 화내의 범위에 속하였다. 그러면서도 고려국가 범위와 밀접한 삼한일통의식의 범위에서는 발해유민과 유사하게 고려 내부의 세력에 따라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상태여서 그 경계선에 반쯤 걸쳐 있는 위치였다.

IV. 羈縻州와 內地 사이의 탐라국

현종 2년(1011)에 탐라는 고려조정에 '州郡의 例에 의거하여 朱記를 내려 줄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²⁵⁾.' 성주, 왕자들이 고려정부로부터 官印을 받은 것은 자신들의 권위를 도내에 과시하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²⁶⁾. 그리고 주군의 예에 의거한 관인의 사용은 성주, 왕자들의 도내 통치를 위해 고려정부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혹자는 조선시대의 경우에서 소급하여 지방관의 파견이 없는 탐라에 관인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회의를 가질지 모른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달리 고

24) 김일우, 1998 앞의 책 141쪽

25) 《高麗史》 권4 世家4 현종 2년 9월 을유

26) 진영일, 2003 〈고려 숙종 10년 '탐라군'설치 고찰〉 《탐라문화》 23

려시대에는 지방관의 파견이 없더라도 지방의 지배층인 고위향리 戶長들이 중하위 향리들을 거느리고 邑司에서 집무하며 그 중 대표인 首戶長이 중앙 정부로부터 받은 관인을 가지고 문서행정의 결재를 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관이 파견된 州郡縣이더라도 지방관이 집무하는 官衙와 호장들이 집무하는 邑司가 병존하고, 鄉吏들에게는 外官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의 자치적 운영 권한이 부여되었다. 읍사에서는 首戶長이 職印을 맡아 관리하며, 호장들이 공문을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外官에 이첩하고 외관을 통해 중앙정부와 연결하였다²⁷⁾.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토대로 탐라군이 주군의 예에 따라 주기를 받으려 한 것의 실질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탐라가 고려정부와의 관계에서 직접 문서수발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연결을 원한 것이 된다. 탐라는 독자적 국을 칭하는 화내의 한 단위로서 고려정부와 제한적인 면에서만 연락할 수 있는 관계에서 내지의 주군에 준하는 전면적인 문제로 중앙정부와 연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아직도 내지의 주군에 준하는 위치이고, 외관의 매개 없이 고려정부와 직접 연결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행정체계에서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자치권의 면에서는 탐라국을 칭하던 재량권이 폭넓었던 상태에서 내지 군현의 자치권에 가까운 상태로 축소되는 것을 수반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탐라 지배층으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게 하였을까.

탐라가 朱記를 요청한 현종 2년 9월은 거란의 침입군이 일단 물러가고 국왕이 나주 몽진에서 돌아온지 7개월 후였다. 고려로서는 지킬 수 없는 현종의 親朝를 약속한 때문에 거란의 다음 침공에 대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때였다. 이후 탐라의 동향을 보면 다음해 현종 3년에 大船 두 척을 바친 것을 비롯하여, 현종 21년까지 방물을 바치는 등 《高麗史》에 자주 등장하여, 현종 재위 22년간 총 12건이 나타나, 연평균으로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

27) 尹京鎮, 2000 〈古文書 자료를 통해 본 高麗의 地方行政體系〉 《韓國文化》 2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난다. 이중 현종 20년 조난당한 탐라민이 일본에서 생환한 것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건의 기사는 모두 방물 등의 물품을 진현한 기록이거나 물품의 진현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사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기적이고 通常인 것은 국왕의 親行 등과 같은 특별한 것이 아닌한 대부분 생략되는 것이 《高麗史》 편찬의 원칙이므로, 11건의 기사는 통상적인 것이 아닌 내조와 물자의 진현을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쟁중 또는 전후의 고려정부에 탐라가 다른 때보다 많은 물자를 보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록상 이러한 탐라의 움직임은 자발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고려의 化內 지역에서는 여진의 집단들도 자발적으로 무기나 말 등을 보내오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진은 東蕃과 北蕃에 걸친 넓은 지역의 여러 집단들이었으므로 개별 여진 집단은 고려정부에 대한 지원에서 탐라와 비교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진은 동여진의 집단처럼 곤경에 처한 고려의 변경을 침공하여 약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곤경에 처한 고려정부에 탐라가 오히려 지원을 늘리고 있는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그만큼 탐라와 고려정부의 관계는 잦은 접촉을 가지며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탐라가 고려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서행정상 내지군현에 준하는 위치를 필요로 하게 된 배경적 요인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배경을 본다면, 탐라와 내지의 연결관계가 발달하는 것에 비례하여 고려정부의 관리들이 점차 탐라의 일에 관여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었는데, 그에 대처하여 탐라의 지배세력은 가능한 한 고려정부의 중심부에 직접 의사소통을 할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종 2년은 고려의 지방 및 화내 세력들에 대한 전시체제로서의 경계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탐라에 旬當使가 파견되기 시작했다는 추정을 한 견해가 있다²⁸⁾. 구당사는 거란과 대치하게 된 성종 13년(994)에 압록강 하류의 나루 鴨綠渡에 처음 설치되었고, 그 후 점

28) 김창현, 1998 앞 논문

차 강이나 해안의 중요한 나루나 항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증설된 관직이다. 탐라의 구당사는 문종 33년에 그 존재가 기록에 처음 나타나서, 그 신설은 그 이전의 일이 되고, 목종대 화산활동과 관련한 보고 과정을 보면 당시에 고려관리가 탐라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처음 설치하는 그 후가 되는데, 그 중 가장 유력시되는 것이 현종 2년 탐라가 朱記를 갖게 된 때 전후라는 추정이다.

탐라 구당사에 대해서는 성주층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기능²⁹⁾, 탐라의 동향을 살피고 보고하여 본국과의 연락을 맡는 정도의 기능을³⁰⁾ 갖는다는 연구들이 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최초의 구당사의 본래 기능이 거란과의 국경 나루터를 통제하고 동향을 감시하는 기능이었던지 탐라 구당사도 탐라의 나루터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중요했으리라는 것이다. 현종대에 鴨綠渡 구당사로 파견된 하공진이 낮에는 물가(나루)에 나가 감시하고, 밤에는 내성에 들어와 잤다는 것은 그러한 면을 보여준다³¹⁾. 당시 탐라의 나루는 탐라와 고려의 배들뿐만 아니라 일본과 송나라의 배들도 오가는 곳이었으므로 그 동향을 밀착 감시하는 것은 고려정부가 주위 나라들의 동향의 일각에도 정보망과 감시체계를 확보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후대의 일이지만 元의 世祖가 고려를 臣服시키고서 '탐라를 남송과 일본에 대한 요충으로 注意하였다'고 함도³²⁾ 탐라의 그러한 전략적 요충의 성격과 관련되는 것이다.

탐라 구당사가 성주 등을 통제하고 감시하거나 연락기능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탐라의 나루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연장선상에 국한되었을 것이다.

29) 진영일, 2003 앞 논문

30) 김창현, 1998 앞 논문

31) (전략) 是故 遣河拱辰於鴈門 爲勾當使於鴨綠 晝則出監於東湊 夜則入宿於內城 遂仗天威 漸祛草竊 後來無備 邊候益閑 (《高麗史》 권10 世家10 宣宗 5년 9월)

32) "世祖既臣服高麗 以耽羅爲南宋 日本衝要 亦注意焉(《元史》 列傳95 外夷1 耽羅)" (至元6年)七月 帝遣明威將軍都統領脫朵兒武德將軍統領王國昌 武略將軍副統領劉傑相 視耽羅等處道路 詔補選官引達 以人言耽羅海道往南宋 日本甚易故也(《元史》 列傳95 外夷1 高麗)

비록 이러한 제한성이 있다 해도, 탐라가 행정체계상 고려국가의 밖인 화내의 범위에 위치한 상태에서 구당사는 고려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구당사가 성주 등에게 하는 말은 곧 고려정부의 명령처럼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구당사와 이전을 가질 경우 성주 등이 탐라의 관점에서 고려정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려 해도 통로가 제한되게 된다. 설사 탐라 구당사가 현종 2년경 보다 뒤에 파견되었다 해도 문종 11년(1057) 가을 별목에서처럼 고려의 관리들이 임시로 공적임무를 띠고 탐라를 방문하여 성주 등에게 고려정부의 명을 전하는 일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려관리와 탐라의 성주의 위치는 앞에서 언급한 구당사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된다.

탐라의 성주가 내지의 州郡의 예에 의해 官印인 朱記를 갖는 것은 탐라의 입장을 고려조정에 직접 전달할 통로를 갖게 되는 것이다. 문종 12(1058)년에 大船을 만들기 위해 탐라에서 다시 별목을 하려 하자 內史門下省이 그를 중지시키며, 그 불가한 이유의 하나로 전년(1057)의 佛寺 건축용 대규모 별목에 민력이 피폐해진 탐라의 자세한 사정을 들고 있는 것은 탐라의 입장이 비교적 자세히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³³⁾.

주군의 예에 의해 朱記가 수여된 탐라는 化內와 內地郡縣의 중간 단계의 행정적 위치로서 그것은 여진지역의 靺鞨州들에 가깝다³⁴⁾. 기미주는 문종대에 급격히 확대되지만 威雞州같은 경우는 이미 靖宗 4년(1038)보다 전에 설치되어 내려오고 있었다³⁵⁾. 기미주가 되면 원칙적으로 고려조정으로부터 ① 州號와 ② 朱記의 하사, ③ 주민의 編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④ 외교권은 고려조정이 가지나 전반적으로 自治가 허용되고 있었다. 다만 자체내 집단에서의 범죄라도 중요한 犯罪에 대해서는 고려조정이 검토하여 처벌을 내릴 수도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그 관습적 법을 존중하였다.

33) 《高麗史》 권8 世家8 文宗 12년

34) 이 시기 기미주에 대해서는 송용덕, 2005 〈高麗前期 國境地域의 主領城編制〉 《韓國史論》 51에서 비교적 자세히 검토되었다.

35) 《高麗史》 권84 刑法1 殺傷 靖宗 4년(1038) 5월

탐라의 경우는 별도의 주호를 새로 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耽羅(國)'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였고, 나머지 세 가지는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州號는 女眞語 村名 밖에 없는 여진 집단의 경우 그를 대치하여 漢式 州號를 부여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일 수 있으나, 상징적이고 형식적일 수도 있으므로 漢式 명칭을 갖는 집단의 경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해도 상징적 새로운 의미부여 이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다. 여기서 혹 숙종 10년(1105) '耽羅郡'으로 읍호를 부여한 것이 그 명칭에서 '國'이 제거되어 ①州號를 정비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제기될지 모르나,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미 현종 2년 단계에 탐라는 고려의 다른 羈縻州들 보다는 내지 군현에 접근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숙종 10년의 조치는 탐라가 행정체계상 완전히 내지 군현으로 편성되는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정부는 초기 이래로 정면으로 적대하는 세력이 아닌 한 지방의 지역자위공동체집단들의 전통과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선에서 국가적 통합을 해나가는 타협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기미주 단계에 들어온 이후에도 탐라의 명칭에 '國'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 것도 그러한 전통적 정책으로 보면 가능한 일이었다.

②朱記는 고려조정과의 문서행정상의 위치와 자격을 부여하는 통치권과 관련된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내지 군현이 아니면서 고려조정의 주기를 받는 것은 기미주로서 편입되는 가장 실질적이고 전형적인 변화일 수 있는 것이다. 탐라가 州郡의 예에 의거하여 주기를 내려주도록 요청한 것에서도 주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③주민의 編籍도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으나 羈縻州 주민에 대한 실태 파악 정도로의 의미를 가졌다. 즉 軍役이나 力役 징발 등이 적어도 정규화 되어 있지 않았고, 역역 징발 등이 실시된다 해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비교적 소량 부과되는 貢物의 경우 호적은 그 상징적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탐라의 경우 편적을 시행한 기사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문종 11년 가

을에 새로운 사원 건축용 목재를 위한 벌목에 탐라민을 동원하고 있고, 문종 12년에는 大船 건조를 위한 벌목을 시행하려다 민폐 등을 고려하여 중지되었다. 문종 6년에는 탐라국의 '歲貢'인 橘子를 1백 包子로 개정하여 정하고 있어, 그 전부터 정기적인 공물이 부과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이 기사는 橘子の 공물 양을 개정한 기록으로 歲貢品에는 다른 지역 산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한 현종 2년 이후 숙종 10년 전까지에서 보면, 현종 20년(1029), 문종 32년(1078), 선종 5년(1088), 숙종 2년(1097), 숙종 4년(1099)에는 조난당한 탐라민을 송이나 일본에서 고려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그들의 신원을 파악한 기록이 나타난다. 이들 기록 중에는 그 이름과 함께 그들이 '我耽羅飄風人'임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바³⁶⁾, 이들이 탐라인이라는 신원확인에는 대개 고려정부의 戶部에 보관된 호적이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탐라의 경우도 편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들이다.

④외교권을 제외한 전반적 自治 허용은 탐라의 경우도 그대로 해당하는 것이다.

외교권이 없으며, 고려의 법제에 의한 수취가 행해지던 이 시기의 탐라는 주위의 다른 나라로부터 고려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었다. 일본의 승려 成尋은 문종 26년(1072)에 제주도 근해를 지나 송으로 가면서 '高麗國 耽羅山을 지났다'고 하였다³⁷⁾. 그보다 10년 뒤 문종 36년(1082) 일본 승려 戒覺 역시 송으로 가는 길에 '毛羅山'을 지나며,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9월) 16일 밤 五更에 이르러 毛羅山을 지났다. 이는 高麗國의 別嶋인데, 人民

36) 《高麗史》권10 世家10 선종 5년 추7월: 권11 世家11 숙종 2년 6월 甲午: 권11 世家11 숙종 4년 추7월

37) 《參天台五臺山記》권1 延久4년 3월 20일 庚子(張東翼, 2004 《日本古中世 高麗資料研究》 181~2쪽; 김기섭 외, 2005 《일본 고중세 문헌 속의 한일관계 사료 집성》 541쪽)

이 많이 살며, 부지런히 土貢을 바친다³⁸⁾.

이는 戒覺이 탐라 근해를 지나며 그가 들은 바를 기록한 것으로 여기에서도 탐라는 고려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많은 주민이 살며, 고려에 토공을 바친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었음이 확인된다.

宋 나라쪽의 기록에서도 탐라는 고려 소속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니, 송의 曾鞏은 元豐 연간(1078~1085) 중서사인으로서 知明州로 재직할 때, 남긴 글에서

臣이 앞서 明州에 부임하였을 때, 高麗 관내의 託羅國人 崔舉 등이(高麗界 託羅國人 崔舉等) 바람에 배를 잃고 표류하여, 泉州 관내에 이르러 漁船에 구원되었습니다.(하략)³⁹⁾

라 하여, 탐라를 國으로 지칭하면서도 고려의 관내(高麗界)로 서술하였다.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嘉祐 년간에(1056~1063) (蘇州) 崑山縣 海上에서 돛대가 부러진 배가 바람에 밀려 해안에 이르렀다. 배 안에는 30여 명이 있었고, 衣冠은 唐人처럼 紅鞵角帶를 띠고 짧고 검은 布衫을 입었다. 사람을 보더니 모두 통곡을 하였는데, 말을 알아 들을 수 없어, 글자를 써보게 했으나 역시 읽을 수 없었다. 다닐 때는 기러기처럼 줄을 지어 서로 함께 움직였다. 한참 후 書 한 통을 꺼내 보여주는데, 唐 天祐 중의 屯羅島首領陪戎副尉를 수여하는 告身 制書(告授屯羅島首領陪戎副尉制)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書가 있었는데, 이는 高麗에 올리는 表(上高麗表)였다. (表文에서도) 역시 屯羅島를 칭하였으며, 모두 漢字를 사용하였으니, 대개 東夷의 高麗에 臣屬한 者이다.(하략)⁴⁰⁾

38) 《渡宋記》 永保2년 9월 16일 (張東翼, 2004 위의 책 190~1쪽; 김기섭 외, 2005 위의 책 556쪽)

39) 曾鞏 《元豐類藁》 권32 筭子 〈存恤外國人請著爲令 不會上〉 (張東翼, 2000 《宋代麗史資料集錄》 424~5쪽)

위에서 屯羅는 毛羅가 와전된 것으로 보이는 바, 屯羅가 곧 耽羅라는 기존 이해는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당시 표류한 탐라인들은 고려군주에게 올리는 表를 소지하고 있었던 바, 이들 일행은 이 표문을 가지고 가다 표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은 11세기 중엽인 嘉祐 년간이었다. 여기서 表는 제후나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니, 이는 皇帝인 고려군주에게 탐라가 '臣屬한 者'라는 것과 합치된다. 송에서 탐라를 고려의 관내로 인식한 것은 탐라가 고려를 중심으로 신속한 세력권내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의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표류한 탐라인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서는 告身 制書였는데, 그 중 陪戎副尉는 고려에서 탐라의 성주 등에게 수여하던 무산계의 하나였다. 여기서 고신이 制書인 것도 고려전기 당시 고려군주가 천자, 황제를 칭하며 그 관문서에서도 詔書나 制書 등의 양식을 썼던 것과 부합한다.

고신의 시기가 唐 天祐 년간(904~907)이라 하여, 신라의 孝恭王代, 摩震의 弓裔代에 해당한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903년에는 궁예의 장수로서 왕건이 水軍을 이끌고 한반도의 서남부 錦城(羅州) 등 10여 郡을 攻陷하였으니, 이 무렵 탐라는 어떤 영향을 받기 시작했을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고신의 시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唐 天祐 년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첫째, 궁예는 독자적인 연호로 904년에는 武泰를 905년부터는 聖冊을 사용하고 있었으니, 독자 연호를 쓰는 상태에서 고신에 唐의 연호를 썼을 가능성은 적다. 둘째, 고려 군주에게 올리는 표문을 가지고 가면서, 백오십여년 전에 궁예에게서 받은 고신장을 소지한다는 것도 그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트리는 사실이다. 세째, 武散階는 成宗 14년에 정비되어 시행되었으니⁴¹⁾, 天祐년간과는 시기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天祐'라는 연호는 '毛羅'를 '屯羅'라 한 것처럼 와전되었거나, 표류 과정에서 글씨가 훼손됨으로 인해 추정 판독한 결과로 보인다. 단, 이 고신이 수여된 시기가 탐라의 배가 출항하던 때보다

40) 范成大 《吳郡志》 권46 異聞 (張東翼, 2000 위의 책 425~7쪽)

41)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武散階

전임은 분명하다.

기미주가 설치된 계기가 알려진 경우는 대개 여진집단들이 自願해 오고, 고려정부에서 그것을 검토하여 승락을 얻어 설치된 경우들이다. 여진족들의 경우 기미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고려와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교역 등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함도 있고, 만주지역 政治體들간의 빈번한 군사적 충돌에서 북방 主鎮城에 주둔하는 고려 군사력의 보호를 받아 안정을 얻으려는 것도 중요한 동기의 하나였다.

탐라도 朱記를 얻기를 자원하고 있었다. 그 동기의 중요한 하나는 앞에서 보았듯이 내지의 고려국가와의 관계가 더욱 가깝게 발달한 때문이었다. 탐라의 경우는 이미 전 시기에도 정치적으로는 化內에 해당하면서도 고려정부로부터의 일부 대우는 삼한일통의식이 적용되는 內地人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현종 2년 이후 탐라인에 대한 삼한일통에 준하는 의식은 더욱 진전되고 있었다.

《高麗史》의 기록을 보면, 현종 20년에는 조난후 일본에서 돌아 온 탐라민을 '生還'하였다고 하여, 고려로 돌아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선종 5년(1088), 숙종 2년(1097), 숙종 4년(1099)의 기사에는 조난후 돌아 온 탐라민들을 '我耽羅飄風人', '我耽羅飄風人', '我毛羅失船人'라 하여 직접 '我(우리)'라는 말로 지칭하고 있다⁴²⁾. 정치적으로는 기미주의 위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탐라인은 고려정부로부터 내지인처럼 '우리의식'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비록 이러한 인식이 완전히 내지인과 동일한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을 요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변화의 시작임은 분명하다.

내지에 준하는 변화는 탐라인이 고려정부 및 중앙지배층에 진출하게 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고려시대로 들어가며 나타난 지배층편성의 중요한 새로운 변화의 하나는 그 지역적 편성이 신라시대의 왕경지역을 출신배경으로 하는 골품귀족과 달리 전국 각지에 걸친 지역지배층들을 고려국가의 지배층

42) 《高麗史》 권10 世家10 선종 5년 추7월: 권11 世家11 숙종 2년 6월 甲午: 권11 世家11 숙종 4년 추7월

의 외연으로 포괄하면서 그들이 중앙정부의 관인으로 진출하는 통로를 열어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11세기에 들어와 탐라 출신 高維가 고려정부의 관인, 그것도 고위관인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은 탐라가 내지에 준하는 위치에 들어가게 된 변화로서도 주목되는 사실이다⁴³⁾.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직 내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준하는 위치였다. 靖宗 11년(1045)에 高維가 賓貢으로 南省試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星主高氏家傳〉의 기록은 고씨집안의 전래 문서에 의거한 것으로⁴⁴⁾, 여기서 고유가 내지의 지방인들에게 해당되는 鄉貢이 아닌 賓貢으로 남성시에 응시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그의 출신지 탐라가 內地가 아닌 羈縻州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문종 11년(1057)에 이른바 清要職으로 불리는 諫官인 右拾遺에 임명되려 하자 중서성에서 그가 탐라출신임을 들어 他官에 임명하도록 임금에게 건의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⁴⁵⁾.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종 2년 이후 탐라는 정치적으로는 기미주의 위치에 있으면서, 탐라인들은 실질적으로 內地에 준하는 '우리의식'의 대상이 되었다. 탐라가 정치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內地의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다음 숙종 10년의 일이었다.

43) 이에 대해서는 김창현, 1999 〈고려~조선초 탐라고씨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7이 참고된다.

44) 《東文選》 권101 〈星主高氏家傳〉(鄭以吾)

45) 《高麗史》 권8 世家8 문종 11년 춘정월 己丑

V. 內地로서의 耽羅郡

탐라는 12세기초에 제도적으로 큰 변화를 보았으니, 《高麗史》地理地에는

肅宗 10년(1105)에 毛羅를 고쳐 耽羅郡으로 하였⁴⁶⁾.

는 기사가 보인다. 毛羅는 耽羅의 異稱으로 1080년대 무렵부터 12세기초 숙종대의 《高麗史》기록에는 오히려 탁라가 탐라보다도 많이 쓰이고 있다. 그 명칭의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宣宗 三年二月 冊封爲太后 諸道皆表賀 州縣並獻布 無慮十萬餘匹 毛羅亦來賀獻
方物 (《高麗史》 권88 列傳1 后妃1 仁睿順德太后李氏)

[毛羅游擊將軍加於乃等 來賀獻方物 (《高麗史》 권10 世家10 宣宗 3년 2월
(1086))]

秋七月 宋明州 歸我耽羅飄風人用叶等十人 (《高麗史》 권10 世家10 宣宗 5년
(1088))

己丑 禮賓省據毛羅勾當使申狀奏 星主游擊將軍加良仍死 母弟陪戎副尉高福令繼
之 賄賂之物 宜準舊例支送 制可 (《高麗史》 권10 世家10 宣宗 7년(1090) 정
월)

耽羅星主懿仁 來獻土物 加定遠將軍 賜衣帶 (《高麗史》 권10 世家10 宣宗 9년
(1092) 2월)

46) 《高麗史》 권57 志11 地理2 耽羅縣

宋都綱徐祐等六十九人 毛羅高的等一百九十四人 來賀即位 獻土物(《高麗史》 권10 세가10 獻宗 즉위년(1094) 6월)

癸丑 毛羅高勿等八十人 來獻土物(《高麗史》 권10 세가10 獻宗 원년(1095) 7월)

庚子 毛羅星主遣人 來賀即位(《高麗史》 권11 세가11 肅宗 원년(1096) 9월)

甲午 宋歸我漂風人 子信等三人 初駐羅民二十人乘舟 漂入裸國 皆被殺 唯此三人得脫 投于宋 至是乃還(《高麗史》 권11 세가11 肅宗 2년(1097) 6월)

宋歸我毛羅失船人 趙暹等六人(《高麗史》 권11 세가11 肅宗 4년(1099) 7월)

戊寅 宋商毛羅女眞等 來獻土物(《高麗史》 권11 세가11 肅宗 5년(1100) 11월)

乙未 以毛羅新星主陪戎副尉具代 爲遊擊將軍(《高麗史》 권11 세가11 肅宗 6년(1101) 10월)

辛未 設八關會 幸法王寺 宋商駐羅東北蕃酋長等 來獻土物(《高麗史》 권11 세가11 肅宗 6년(1101) 11월)

위 탐라에 대한 명칭의 용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숙종 10년 바로 전에는 고려정부의 기록에서조차 지역명의 이칭이 섞여 혼용되고 그런 중에 오히려 '탐라'라는 명칭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종 10년에 탐라를 고쳐 탐라군으로 했다는 것은 우선 公式의 邑號

를 탐라로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 탁라라는 명칭은 이러한 공식적 조치 후에도 정부기록에서 사용된 것을 보면⁴⁷⁾ 그慣用性이 컸던 것으로 보이니, 탐라라는 오래된 명칭을 공식화하면서 탁라를 고쳐 탐라군으로 했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이 시기의 기록에서는 탐라나 탁라나 '國'이 붙지 않은 명칭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위 명칭의 용례가 제한된 기록이므로 '국'을 붙인 용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당시의 큰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는 11세기말에서 12세기 초의 탐라가 이미 國을 붙인 명칭을 쓰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고려의 한 지방으로 사회적 융합이 진전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이 탐라를 內地化한 耽羅郡의 설치였다. 이로서 정치적으로 羈縻州의 위치에 있었던 탐라는 이제 정치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고려의 내지 군현이 된 것이다.

다만, 행정체계상 탐라의 내치는 종전과 같이 기미주체제하에서 성주 등과 그 예하의 조직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외관파견 여부와 무관하게 내지의 군현들도 호장층을 중심으로 邑司를 두고 자치를 행하였던 당시의 제도에 쉽게 부합될 수 있는 것이어서 별다른 큰 변개 없이도 수용될 수 있는 일이었다. 朱記도 이미 기미주 때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編籍도 마찬가지였다.

기미주 당시의 체제가 아직도 남을 수 밖에 없었던 한 가지 특수한 것은 외관 파견이 없는 탐라가 屬縣도 아니어서 主郡에 부임한 외관조차 없는 상태였던 때문에 탐라가 중앙정부와 直牒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수한 과도기적인 형식으로 일반 내지 군현과는 다른 것이었으니, 이로 인하여 탐라는 의종대 외관이 파견되기 전까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의식이나 격식제도면에서 과도기적인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7) 珍島縣民漢白等八人 因賣買 往毛羅島 被風 漂到宋明州 奉聖旨 各賜絹二十匹米二石 發還.(《高麗史》 권13 세가13 睿宗 8년(1113))

비록 그러한 일부 제도적인 면에서 과도기 요소가 남아 있었어도, 탐라가 내지 군현으로 바뀐 것은 탐라인의 신분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高維의 아들 高兆基의 경우 예종 2년에 급제하였는바, 그는 아버지와 달리 《高麗史》에 열전이 있어 급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赴舉 경로에 대한 언급이 없다⁴⁸⁾. 그는 부친의 고관경력(高官經歷)을 고려한다면 國子生으로 禮部試에 부거하였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가 국자생으로서 또는 향공으로서의 일반적인 부거 경로를 거치지 않고 특이하게 賓貢으로 부거하였다면 열전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급제한 시기는 바로 탐라가 내지 군현으로 바뀐 후이므로, 기미주출신이 아니라 내지출신인 그가 빈공으로 부거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였다.

출신 신분의 변화는 고조기의 관력에도 변화를 주었다. 그는 인종대에 清要職의 하나인 臺官職의 侍御史가 될 수 있었다⁴⁹⁾. 이는 그의 선대인 고유가 유능한 인재였으나, 기미주 출신임으로 인하여 청요직에는 취임할 수 없었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다.

고조기 이후에도 그 자손은 고관을 역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高兆基傳〉에는 無子라 했으나, 고조기의 두 권으로 된 詩集 끝에 붙인 고조기의 손자 高適의 글이 〈星主高氏家傳〉에 인용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그에게는 벼슬이 3품에 이른 아들 廷琥가 있었고,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여 환향했다고 하는 또다른 아들 廷益이 있었다⁵⁰⁾. 여기에는 그의 관직명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족보에는 고정익의 벼슬이 吏部尙書라고 하였다. 고정호는 일찍 죽었고 후손이 없었으나, 고정익의 아들이 고적이라 하였다. 고적은 원종 2년(1261)에 과거에 급제하고 金闥(近侍職)에 들어갔다.

48) 《高麗史》 권98 高兆基傳

49) 《高麗史》 권98 高兆基傳

50) 《東文選》 권101 〈星主高氏家傳〉

위에서 고정익이 벼슬에서 물러나 환향한 것이 '元王 癸巳'라 하였는데, 원종 연간에는 계사년이 없어, 그 전후로 보면, 명종 3년(1173)과 고종 20년(1173)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창현, 1999 앞 논문에서도 언급되었다.

5품 이상의 고관을 삼대 이상 배출하면 고려의 귀족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견해를 도식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해도, 고유-고조기-고정호·고정익-고적의 사환은 고조기의 자손대에 이르러 고려 문벌들의 세습적 仕宦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전국 각지의 출신으로 이루어진 중앙지배층에 고려국가의 남단에 위치하지만 큰 규모를 갖는 탐라지역의 출신이 이 정도로 참여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고적의 세대 이후는 삼별초의 항쟁에 휘말리고, 그 후에는 몽고의 제주 병탄과 고려로의 환원이 반복되는 등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내지배층 일반과는 달라진 처지에 놓이게 된다. 몽고와 고려 사이에서 소속의 변동을 겪은 경우는 제주도 외에도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이 있고, 또한 세 지역은 이 과정에서 인구 이동과 구성면에서도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런데 제주도를 포함한 세 지역출신이 공통적으로 뒤에 조선시대에 들어가서도 일반 내지 군현출신들로부터 차별을 받은 것이 주목된다⁵¹⁾. 이 문제는 시기상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상론을 피하겠으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조선시대의 제주도 출신에 대한 차별도 제주도만의 일로 분리하여 생각하기 보다는 유사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평안도나 함경도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탐라의 내지 군현화는 지배층만이 아니라 피지배층에도 신분상의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들은 내륙의 군현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力役 징발의 대상이 되고, 또한 稅制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일반 내륙 군현민

51) 조선시대의 세 지역에 대한 차별에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그 역사적 배경의 유사함이 주목된다. 배우성, 1988 〈조선후기 邊地觀의 변화와 地域民 인식〉 《歷史學報》 160에서는 변지민에 대한 차별의 인식이 성리학적 교화와 왕화의 손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주되는 것과 관련되었다고 보았다. 王都로부터의 거리에 덧붙여 왕화에 참여한 역사적 시간상의 격차와도 관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평안·함경 지역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오수창, 2002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10~36쪽

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대민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지방관을 파견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생활은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VI. 外官 파견 후 탐라군의 自治

내지로 편입된 탐라에 외관이 파견된 것에 대해 《高麗史》 지리지에는

毅宗時에 縣令官으로 삼았다.

고 하였다. 이 변화를 놓고 외관파견에 근거하여 탐라가 지방행정체계상으로 승격되었다거나 현으로 된 것에 근거하여 강등되었다거나 하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보통 屬縣으로 위치하다가 외관이 파견되어 主郡縣이 되면 승격된 것으로 보는데, 숙종대 이후 탐라는 속현으로 편제되어 있지 않고 과도기적으로 종전처럼 중앙정부와 행정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直牒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령 파견에 의한 승격으로서의 의미가 적다. 또한 군에서 현으로의 변동을 강등으로 보는 것도 외관을 처음 파견함에 따른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 강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외관 파견 후 탐라가 자치권을 상실하였다는 이해에 대해서도 두 가지 면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앞 장에서 보았듯이 탐라는 고려 이전부터도 대외적인 교섭권을 갖지 못하였고, 내부적인 자치권도 고려국가와의 사회적 융합이 진행되면서 점차 재조정되어 축소되어 왔던 것이며, 의종대 현령관 파견과 함께 갑자기 불연속적 변화를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고려의 지방행정체계는 외관이 파견된 군현에도 자치권을 크게 부여하는 체계였다는 것이 근래의 연구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고려시대의 향리는 조선시대의 향리처럼 하나의 계층이 아니라 지배층의

일원인 상층부의 戶長層과 중하층의 실무 향리층으로 신분이 나뉘어졌다. 호장층은 고려초 이래로 지방호족에서 연원하여, 지방사회의 최고위층인 지배층으로서 중앙의 문무품관을 배출하기도 하고 그들과 통혼도 하는 위치에 있었다. 탐라의 경우도 외관파견 후에 종래와 마찬가지로 성주와 왕자를 배출하는 지배층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행정체계상에서 보면, 조선시대와 달리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이 없더라도 지방의 지배층인 고위향리 戶長들이 중하위 향리들을 거느리고 邑司에서 집무하며 그 중 대표인 首戶長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관인을 가지고 문서행정의 결재를 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관이 파견된 郡縣이더라도 지방관이 집무하는 官衙와 호장들이 집무하는 邑司가 병존하고, 鄉吏들에게는 外官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속에서도 지역공동체의 자치적 운영 권한이 부여되었다. 읍사에서는 首戶長이 職印을 맡아 관리하며, 호장들이 공문을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外官에 이첩하고 외관을 통해 중앙정부와 연결하였다⁵²⁾.

그러한 문서 수발상의 과정은 외관의 기능이 강화되고 향리들의 권한이 약화된 고려중기의 長城監務官貼에서도 잘 나타난다⁵³⁾. 이 문서는 1198년에 장성 감무관이 스스로를 ‘當司’로 칭하며, 僧錄司로부터 내려온 공문에 따라 처리할 사항을 長城 郡司에 지시하는 貼을 보낸 것이다. 해당업무의 처리를 위해 앞서 1196년에는 장성군 戶長 徐純仁이 장성 감무관에게 ‘報狀’이라 한 문서로 보고한 것 역시 이 문서에 보인다. 문서의 처리 업무 내용인 ‘白巖寺의 法孫傳繼’는 郡司에 있는 문서대장인 ‘公案’에 등재하고, 감무관에게는 그 사실만을 보고하는 것으로 완료되었다.

호장을 중심으로 한 향리들이 집무하는 읍사는 문서행정에서 독자적 단위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읍사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사라지고, 수호장의 직인은 중앙정부에 의해 회수되며, 향리는 지방관에 직속된 말단 행정

52) 尹京鎮, 2000 앞 논문

53) 노명호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上-판독·역주편》 365~368 쪽

실무자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많은 屬官이 딸린 外官을 제한된 지역에 파견하면서, 많은 수의 지방행정단위들을 屬縣 상태로 두었던 고려시대 지방행정체계가 이해될 수 있다⁵⁴⁾. 그것은 지역공동체들의 자치를 상당부분 허용하는 속에 그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수행하는 체제였던 것이다. 고려시대 지방사회의 자치권은 고려후기 특히 14세기 이후에 점점 더 빠르게 축소되는 변화를 보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가 수호장의 관인이 중앙정부에 회수되고 邑司의 기능이 소멸되기까지 지방적 편차를 가지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 갔다.

이러한 내륙 군현의 자치권과 그 관련 제도들을 본다면, 같은 내지의 군현이 된 탐라의 자치권은 성주와 왕자의 존재와 함께 외관파견 후에도 상당부분 존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성주와 왕자는 호장층에 대응되는 존재가 되었지만, 오랜 관습에 의해 지역사회 내에서 그 권위와 격은 내륙 군현의 호장층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륙에서도 호장층의 사회적 위상이나 실제 세력은 邑勢에 따라 조금씩 지역차가 있었다. 외관파견 후 탐라의 자치권의 존속과도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다음의 자료이다.

(의종 7년 11월) 庚子에 耽羅縣 徒上 仁勇副尉 中連 珍直 等 12인이 와서 方물을 바쳤다⁵⁵⁾.

위 자료에서 보면 현령관 파견후의 官號인 탐라현이 보이는 바, 이 때에 이미 현령관이 파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해석이⁵⁶⁾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관파견후에도 성주 등의 전통적 직제는 탐라현의 읍사를 구성하게 되었으니, 위의 徒上도 그것을 보여준다. 또한 탐라의 전통적 직제는 내륙군현의 고위향리직에 대응하게 되었거니와, 이들이 외관파견 전에 받은 仁勇副尉와 같은 武散階는 고위향리들에게도 수여되고 있었으므

54) 朴宗基, 1992 〈高麗時代 外官屬官制 연구〉 《震檀學報》 72

55) 《高麗史》 권18 世家18 毅宗7년 11월 庚子

56) 김일우, 1998 앞의 책, 208쪽

로, 외관파견후에도 계속 보유해도 제도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 수여되고 있었다.

여기서 검토를 요하는 문제는 위 기사가 당시 팔관회 때의 일이라는 사실이니, 내지군현의 읍사로서는 팔관회에 하례하는 인원을 보낼 수 없었던 것과 제도적 충돌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탐라는 숙종 10년 전까지는 기미주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팔관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숙종 10년 이후는 내지군현으로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외관이 없이 중앙정부와 직첩관계를 갖는 과도기적 특수 상태였으나, 외관이 파견된 후에는 명백히 제도적 격식에 배치되는 것이다. 내지군현 읍사의 수호장은 신년하례 등은 할 수 있어도 팔관회에 하례할 자격은 없었다.

위 의종 7년(1153)의 기사를 끝으로 탐라의 팔관회 하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탐라가 자치권을 상실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지 군현의 읍사를 중심으로 한 자치권은 갖지만 제도에 따라 팔관회에 하례를 하지 않게 된 결과였다. 팔관회는 고려국가의 중심적인 제천의례이기도 하여, 의전절차와 제도격식의 거행에 대해서는 당대의 정예관원들이 감독하고 있었으므로 탐라의 하례가 그에 위배되는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위 의종 7년 기사는 종래의 관행에 따른 하례 인원 파견이 제도에 위배됨을 확인하고 그 후로는 중지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검토가 받아들여진다면, 의종대로만 기록된 탐라 현령이 최초로 파견된 시기를 좀더 구체화하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즉 팔관회는 매년 열리고 있었고, 의종 6년(1152)에도 개최되고 있었으므로, 탐라 현령이 처음으로 파견된 것은 의종 6년 11월 팔관회 후부터 의종 7년 11월 팔관회 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탐라 현령으로서 기록에 남은 가장 이른 시기의 인물인 崔陟卿이 崔允儀와의 관계를 통해 의종 16년에 부임했다고 비정되는 사실과도⁵⁷⁾ 배치되지 않는다. 최척경이 탐라현령으로 부임한 사실이 기록

57) 고창석, 1993 〈중세사〉 《제주도지 I》

진영일, 2003 앞 논문

으로 남게된 것은 그가 청렴한 名官으로서 탐라인들의 칭송을 받아 두 차례나 탐라현령으로 부임한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탐라현령 중 첫 번째 부임한 것이라면 그러한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실이 그의 列傳에 서술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를 처음 탐라현령에 추천한 崔允儀의 墓誌銘에는 최윤의가 판이부사로 있으면서 탁류와 같은 부패한 무리들을 몰아내고 맑은 물과 같은 청렴한 사람들을 등용했다고 하였고⁵⁸⁾, 최척경전에서도 최윤의가 그를 탐라현령으로 추천하면서 그의 청렴함을 사서 어려운 탐라현령직을 맡기려 했음을 서술한 것을 보면⁵⁹⁾, 문제되는 전임자들을 청렴한 인물로 바꾸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

VII. 맺음말

이상에서 10세기에서 12세기의 탐라와 고려국가의 관계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역동적인 변화를 하였음을 검토하였다. 이제 그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건국 후 11세기초까지 탐라는 만주지역의 여진, 발해유민과 함께 海東天下의 범위에 들어가며, 그 중에서도 고려 황제로부터 관작을 받고 군사·외교·교역 등의 교류를 긴밀히 맺는 化內의 범위에 속하였다. 그러면서도 탐라는 고려국가 범위와 밀접한 三韓一統意識의 범위에서는 발해유민과 유사하게 고려 내부의 세력에 따라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상태였다.

고려정부는 漢族, 契丹族, 女眞族과의 교섭에서 譯官과 通事를 두었고, 만주지역 발해유민과의 관계에서는 通事만을 두었는데, 탐라와의 관계에서는 둘 모두를 두지 않았다. 역관을 설치하지 않은 발해유민과 탐라의 경우는

58) 〈崔允儀墓誌銘〉(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59) 《高麗史》권99 列傳12 崔陟卿傳

방언의 차이는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내지인들과의 적지 않은 접촉기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의사소통에 별도의 통역을 거쳤던 흔적이 없다. 또한 거란족이나 여진족 등과 달리 이들은 문화적으로도 내지인들과 큰 충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여진과 크게 다르면서 발해유민들과 유사한 점이다. 또한 탐라의 경우 通事도 두지 않은 것은 만주지역의 발해유민과 달리 외교적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적었던 징표일 수 있다.

탐라가 아직 化内の 범위에 속했던 11세기초에 탐라는 고려 군주와 관련된 祥瑞나 咎徵이 나타난다고 관념되는 내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범위에 포함되고 있었다. 이는 탐라에 아직 관리도 파견하지 않았고 기미주 형식으로도 편성되지 않은 화내의 단계이지만, 고려 중앙정부에서는 그 지역이 내지 군현에 준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속에 탐라인은 고려도성을 방문하는 인원이 여진과 달리 대규모로 허용되고, 국내외 상인과의 거래가 허용되는 한편 체류기간의 제약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 2년(1011)에 탐라는 고려조정에 요청하여 州郡의 例에 따라 朱記를 받았다. 이로써 탐라는 행정체계상 고려의 羈縻州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적 요인의 중요한 하나는 당시 탐라와 고려정부가 잦은 접촉을 가지며 가까워져, 탐라는 고려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서행정상 내지군현에 준하는 위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탐라와 내지의 관계가 발달하는 것에 비례하여 고려정부의 관리들이 점차 탐라의 일에 관여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었는데, 그에 대처하여 탐라의 지배세력은 가능한 한 고려정부의 중심부에 직접 의사소통을 할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었다.

현종 2년경에는 탐라에 상주하는 句當使가 파견되었는데, 구당사가 성주 등에게 하는 말은 곧 고려정부의 명령처럼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한편, 탐라의 지배층이 구당사와 이견을 가질 경우 탐라의 관점에서 고려정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통로가 필요하게 되었다. 구당사의 본래 기능은 국경 등의 중요 나루터를 통제하고 동향을 감시하는 기능이었으나, 업무의 성격상

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제한적으로 성주 등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고려정부와의 연락기능을 하였다.

외교권이 없으며, 고려의 법제에 의한 수취가 행해지던 이 시기의 탐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고려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었다. 일본의 승려 成尋은 문종 26년(1072)에 제주도 근해를 지나 송으로 가면서 '高麗國 耽羅山'이라 하였으며, 宋에서도 託羅國을 '高麗管内'라 하였다.

고려국가 내에서 탐라는 정치적으로는 기미주의 위치이지만 탐라인은 고려정부로부터 내지인처럼 '우리의식'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런 속에 탐라인은 고려정부 및 중앙지배층에 진출하였다. 11세기에 탐라 출신 高維가 고려정부의 관인, 그것도 고위관인으로 진출한 것은 그러한 면을 잘 보여준다. 단, 그가 鄉貢이 아닌 賓貢으로 남성시에 응시한 이유는 제도적으로 그의 출신지 탐라가 內地가 아닌 羈縻州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탐라는 숙종 10년 耽羅郡이 됨으로써 기미주에서 內地가 되었다. 이 때에 당시 '耽羅'와 함께 '毛羅'가 자주 혼용되던 상황에서 '耽羅'를 공식 읍호로 하였다. 11세기말 이후 12세기초에는 '탐라국'이라는 명칭도 거의 사라졌는데, 이는 이미 형식적으로라도 '國'을 붙인 명칭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고려의 한 지방으로 사회적 융합이 진전된 결과였으니,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기미주의 상태였던 탐라를 내지 군현으로 만든 것이 탐라군의 설치였다.

아직 외관파견은 없었으나 행정체계상 탐라군의 내치는 종전과 같이 성주 등과 그 예하의 조직이 담당하였는데, 이는 다른 내지 군현들도 외관파견 여부와 무관하게 戶長層을 중심으로 邑司를 두고 자치를 행하였던 제도와 쉽게 부합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 특수한 것은 외관 파견이 없는 탐라가 屬縣도 아니어서 主郡에 부임한 외관의 관할도 받지 않는 상태였던 때문에 탐라가 중앙정부와 直牒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형식으로 인하여 탐라는 의종대 외관이 파견되기 전까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격식제도면에서 과도기적인 상태였다.

내지 군현이 된 탐라의 지배층은 종전과 달리 賓貢이 아닌 鄉貢으로 과거

에 응시하게 되었으며, 淸要職에 진출 자격도 갖게 되었다. 또한 탐라의 일반민들은 다른 내지 군현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力役 징발이나 稅制의 대상이 되었고, 중앙정부의 대민정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탐라에 외관이 처음 파견된 것은 의종 즉위년부터 16년 사이임이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인데, 탐라의 마지막 팔관회 하례가 외관파견전의 과도기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면, 외관이 처음 파견된 시기에 대한 추정은 의종 6년 11월 팔관회 후부터 의종 7년 11월 팔관회 전으로 좁혀 볼 수 있다.

외관 파견 후에도 탐라는 자치권을 완전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탐라는 고려 이전부터 대외적인 교섭권은 없었고, 내부의 자치권도 고려국가와의 사회적 융합이 진행되면서 점차 재조정되어 축소되었는데, 숙종대 내지군현 편성 이후의 과도기를 거쳐 의종대 현령관 파견 후에는 내지군현에 가까운 자치권을 갖는 상태로 조정된 것이다. 외관파견 여부와 무관하게 호장을 중심으로 한 향리들이 집무하는 읍사는 문서행정에서 독자적 단위였던 만큼 내지군현들의 자치권은 지역적 편차는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 성주와 왕자는 호장층에 대응되는 존재가 되었어도, 오랜 관습에 의해 지역사회 내에서 그 권위와 격은 내륙 군현의 호장층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탐라의 자치권도 일반적인 내륙군현보다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高麗史》
 《高麗史節要》
 《三國遺事》
 《宋史》 권487 列傳246 外國3 高麗
 《續資治通鑑》 권 74 大中祥符 3년 11월조(거란 統和28년, 고려 현종 원년)
 《東文選》
 金龍善, 《高麗墓誌銘集成》
 노명호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 上-판독·역주편》
 張東翼, 2000 《宋代麗史資料集錄》
 張東翼, 2004 《日本古中世 高麗資料研究》
- 김기섭 외, 2005 《일본 고증세 문헌 속의 한일관계사료 집성》
 강창현, 1998 〈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고창석, 1993 〈중세사〉 《제주도지 I》
 金庠基, 1985 《新編 高麗時代史》
 金日宇, 2000 《高麗時代 耽羅史 研究》
 김창현, 1999 〈고려~조선초 탐라고씨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7
 노명호, 1997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的 天下觀〉 《震檀學報》 83
 노명호, 1998 〈高麗 支配層의 渤海遺民에 대한 認識과 政策〉 《汕耘史學》 8
 노명호, 1999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노명호, 2003. 〈통념과 이념에 가리운 고려사회의 체제적 특징들〉 《한국사 연구방법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학회편
 노명호, 2004〈고려시대 지역자위공동체〉 《한국고대중세 지방제도의 제문제》
- 朴宗基, 1992 〈高麗時代 外官屬官制 연구〉 《震檀學報》 72
 方東仁, 1985 〈高麗前期 北方政策의 推移〉 《領土問題研究》 2
 배우성, 1988 〈조선후기 邊地觀의 변화와 地域民 인식〉 《歷史學報》 160
 송용덕, 2005 〈高麗前期 國境地域의 主鎮城編制〉 《韓國史論》 51

- 송용덕, 2005 〈고려전기 국경지역의 주진성편제〉 《한국사론》 51
오수창, 2002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尹京鎮, 2000 〈古文書 자료를 통해 본 高麗의 地方行政體系〉 《韓國文化》 2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李熙德, 1978 〈高麗時代 五行說에 대한 研究-《高麗史》五行志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79
진영일, 1996 〈고려전기 탐라국 연구〉 《탐라문화》 16.
진영일, 2003 〈고려 숙종 10년 '탐라군'설치 고찰〉 《탐라문화》 23
추명엽, 2002 〈고려전기 '변'인식과 '동·서변'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추명엽, 2005 〈고려시대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2005년 10월 20일 접수

2005년 12월 14일 최종 수정본 접수

3인 익명심사필

Tamra(耽羅) and Koryŏ(高麗) Dynasty from 10th to 12th Century

Ro, Myoung-Ho*

〈Abstracts〉

Tamra was the ancient name of the Jeju(濟州) island which is in the south east sea of Korean Peninsular. In 10th century, Tamra was not the territory of the Koryŏ Dynasty but belonged to the Haedong-Chŏnha(海東天下) which comprised a broad region around Koryŏ Dynasty and itself, and the societies of which the emperor of Haedong(海東天子), the king of Koryŏ led in military and foreign affairs. The societies of Haedong-Chŏnha around the Koryŏ were called bŏn(蕃). Many of the Jurchen(女眞) tribes and the groups of Parhae People(渤海遺民) in Manchuria as well as Tamra were the bŏn societies. However, Tamra and Parhae People were treated more friendly than Jurchen by Koryŏ government. Sometimes their people were treated similarly to the domestic people by Koryŏ government because they had much more historical and cultural common base.

Some societies among bŏn societies were called hwanae(化內). The political leaders of the hwanae societies had titles which were given or ratified by the emperor of Haedong, and they obliged to be loyal to the emperor in the military and foreign affairs. In 10th century, Tamra was a hwanae society of the Haedong-Chŏnha.

In 1011, Tamra was given a Jugi(朱記), the official stamp of local government by Koryŏ government, and became a kimiju(鎭察州) of Koryŏ. Tamra was indirectly more controlled by Koryŏ from this time. In this year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r thereabouts, a kudangsa(句當使) was sent to Tamra to control and supervise the seaport and the movements of the vessels. Tamra was autonomous in home administration, but not in foreign affairs. It had to pay tributes to Koryŏ that was provided by the law of Koryŏ. It was described as a part of Koryŏ territory in the records of Sung(宋) China and Japan at that time. In 11th century, a man of its ruling class became a high officials of Koryŏ government through civil service examination for foreigner, because Tamra was a kimiju.

In 1105, Tamra was incorporated into the boundary of Koryŏ as a kun(郡), a country in the territory of Koryŏ. 'Tamra(耽羅)' was determined as a official country name. Before this decision, it was mingled with 'Takra(毛羅)'. The central government sent the first administrator to Tamra around 1153.

Key Word : Jeju(濟州) island, Koryŏ Dynasty, Tamra(耽羅), kimiju(羈縻州), system of local administration